

海外旅行者가 알아두어야 할 稅關知識

白 元 植

〈韓國關稅協會 調查出版部長〉

까다로운 通關

海外門戶가 개방되면서 空港을 넘나드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0년도 20여만명에 불과했던 内國人 여행객도 80년도에 1백 20만명, 지난해엔 1백 56만명으로 急增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觀光여행마저 자유화됨으로써 여행자수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自律·開放時代가 정착되고 國民所得이 꾸준한 신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등을 통하여 世界가 더욱 가까워질 때 海外旅行은 우리 生活에서 거의 일반화되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海外旅行은 稅關에서 시작돼 稅關에서 끝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旅行을 節次상으로만 따졌을 때의 얘기이지만 어쩌면 「日製밥통」을 사들고 들어오는 수준의 여행자들에겐 가장 直接的이고도適合한 表現이 될는지 모른다.

稅關은 어느 나라의 경우나 出入國時 꼭 거쳐야 하는 문턱이며 이 곳의 檢查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稅關은 그야말로 까다롭기가 소문난 곳으로 꼽힌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진박한 南·北의 대치

관계로 安保上의 問題가 심각할뿐 아니라 關稅의 장벽을 넘어 一攫千金을 노리려는 밀수꾼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稅關을 가꾸기에 心血을 기우리고는 있지만 철저한 檢查·檢索으로 인해 때로는 善意의 旅行者들로부터 짜증을 사고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최근의 空港사정을 보더라도 업무량의 폭주에 비례하여 公航密輸 역시 늘고 있을뿐 아니라 그手法 또한 知能化·多技化돼 가고 있는 경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空港에서 적발된 密輸品만도 무려 68억원어치나 된다고 한다.

올해 들어선 그럴듯한 명분으로 外國을 다녀온 일부 주부들이 過多쇼핑끝에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강화됐으며 모든 公職者들의 휴대품搬入도 3월 1일부터 대폭 규제되기에 이르렀다.

과다쇼핑으로 귀한 外貨가 낭비되고 사치풍조가 만연될 뿐더러 終局엔 우리의 產業社會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의의 여행자들도 通關에 대한 常識이 없을 경우 막상 歸國時에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당황하기 마련이다.

바른 要領을 모르기 때문이다.

海外로의 門戶가 開放되는 차제에 内國人을 위한 일반적인 휴대품 通關要領과 어떤 物品이 어느 線까지 免稅通關되고 課稅通關할 수 있는지 稅率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空港税關의 檢査

海外旅行을 자주 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휴대품 通關検査의 농도가 짙으나 얕으나 하는 것은 각국의 安保감시적 여건과 經濟發展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地政學의 특수성과 經濟的中進性으로 稅關検査가 다른 先進國들에 비해 까다롭지만 이는 國家의特殊狀況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다.

그러면 歸國旅行者가 비행기에서부터 通關을 끝마칠 때까지의 節次를 간략히 살펴 보자.

여행자는 비행기 내에서 稅關申告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에는 여행자가 여행 중에 구입한 신변 휴대품이나 물품의 목록 및 가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에서 내린 여행자는 손가방 등 간단한 소지품을 직접 電池 保社部의 檢役과 法務部 출입국관리소의 入國查閱을 마치고 稅關検査場에 도달하면 검사장 입구에 설치된 X-ray 투시기와 금속탐지기에 의한 신변 및 휴대품 검사를 거쳐 검사장에 들어서게 된다.

검사장안의 貨物터미널에는 X-ray 투시기 검사를 끝낸 여행자의 화물이 콘베이어시스템에 의해 실려 온다.

제 짐을 찾은 여행자는 内·外國人, 公職·非公職者로 구분되어 있는 稅關検査대 중 자기여신분에 맞는 검사대를 골라 휴대품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대에 선 여행자는 먼저 비행기내에서 작성한 稅關申告書와 여권을 세관검사직원에게 제출해야 되며 세관직원은 여권과 신고서를 받아 우선 컴퓨터에 신원조회를 한다.

여기서 신원조회결과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여행자임이 밝혀지면 휴대품에 대한 철저한 개장정밀검사가 실시되며 휴대품 은익의 정보나 혐의가 있게 되면 신변검사도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선량한 여행자(세관신고서에 누락없이 기재한 사람)의 경우는 免稅범위와 通關許容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마치게 하여주고 있다.

한편 비행기에 기탁된 화물은 화물분류장에서 X-ray 투시기 검사를 받고 異常이 있는 물품은 별도로 세관검사원에게 연락되어 전량 개장정밀검사를 실시해 은익된 安保위해물품이나 密輸品을 적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 새로導入된 최신형 X-ray 투시기는 여행자 휴대품 속에 있는 어떠한 물체라도 모두 식별해 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과학장비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 싶다.

檢査場의 通關處理

세관검사대에서의 검사가 완료되면 여행자 휴대품은 △免稅대상물품 △課稅대상물품 △再輸出물품 △檢役대상물품 △犯則물품 △安보危害물품 등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現行 통관규정상의 물품분류 및 통관형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물품분류

① 免稅대상물품은 면세통관 범위내의 물품으로서 허가·승인·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통관규제가 없는 경우 免稅通關한다.

② 휴대품의 전체수량이 많지 않고 또 단순한 가사용품과 선물용품 등 용도 및 성질상 명확한 免稅 해당물품은 검사 진행중이라도 여행자에게 인계하고 있으나 전체수량을 고려하여 면세량이나 품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휴대품 검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면세범위를 결정한다.

③ 檢役대상물품으로서 現場면세물품은 전체 검사 완료후 검역관에게 인계 한다.

④ 一時入國 여행자가 그 신변품이나 직업용구로서 면세통관할 수 없는 非消費品(예: 고급시계·카메라·글프세트·귀금속·보석·카세트 등)은 국내체류기간중 사용하다가 出國時 다시 搬出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 여권말미의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면세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다.

나. 휴대품 유치

면세범위 초과물품·安保危害물품·기타 輸入

규제가 있어 현장에서 免稅通關이 어려운 경우는 이 물품을 유치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된다.

① 電算課稅 : 휴대품通關은 가능한한 검사대에서 전산과세 통관도록하여 여행자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② 現場通關 :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휴대품으로서 현장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현장통관하도록 안내한다.

③ 事後通關 : 현장과세가 불가능한 물품이나 여행자 본인이 當日통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후일 여구과에서 통관하게 되어 있다.

④ 술·담배·향수 등의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에는 課稅通關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반송할 수 있다.

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물품은 반드시 검사전에 신고하여야 되며 만약 휴대품검사중 적발되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다. 예치물품

① 여행자의 휴대품이라도 국내에 搬入할 의사가 없는 경우 여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물을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② 통과여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품검사전에 예치하는 것이 상례이나 검사중이라도 국내체류시 사용할 물품이 아닌 것으로 휴대반입이 적합치 않고 市場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예치하게 된다.

라. 반송물품

과다반입물품과 수입금지물품으로서 국내반입은 불가능하나 압수의 실익이 없으며 國外搬出의 이행만으로 國益을 해치지 않는 물품은 反送조치 한다.

마. 심리의뢰물품

세관검사원이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안보위해물품이나 고의적은익물품, 關稅法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물품 등을 적발하였을 때는 즉시 심리의뢰도록 되

어 있다.

免稅 및 通關許容범위

가. 면세범위

① 신변품 : 양복·와이셔츠·내의·화장품 등 여행자가 휴대가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중에 있거나 입국후 분명히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신변장식품 : 지황·목걸이·카프스단추를 비롯한 신변장식품중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중에 있거나 예비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직업용구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직접 필요로 하는 휴대식 용구로서 여행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④ 재수입품 : 출국시 휴대반출한 것으로 신고 확인된 물품.

⑤ 준이사물품 :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하는 자로서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것을 귀국하여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⑥ 주류·담배·향수 : 주류는 외국인 2병, 내국인 1병(760cc 이내)이며 담배는 1보루(10갑), 향수는 2온스 1병에 한한다.

⑦ 기타물품 :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表-1)의 계기물품은 면세통관허용수량에 한하여 면세통관되며 과세통관의 경우에도 과세통관허용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횡청심환 1백정을 반입했을 경우 그중 10정은 免稅, 40정은 課稅通關되지만 나머지 50정은 통관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해당물품을 반송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때는 4개월 경과후 국고에 귀속된다.

課稅·稅率의 基準

이상에서와 같이 대략적인 통관 및 과세요령을 알아 보았는데 특히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세율과 간이세율 2종류가 있다는 것

<表-1>

특정물품 면세 및 과세기준 수량

품명	면세통관허용수량	과세통관허용수량	통관불허
우황청심환	10정	40정	
알부민	-	3병	
정구래컷	1개	3개	
시제	1개 (국내도매가격 5만원 이하의 것)	1개	
카세트라디오	1개 (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하의 것, 또는 국산품으로서 사용하던 것)	1개	면세 및 과세통 관허용수량 초 과의 것.
카메라	1개 (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하의 것, 또는 국산품으로서 사용하던 것)	1개	
향수	1병(2온스)	1병(2온스)	
볼펜 및 샤프펜류	1타	-	
비디오테이프	• 여행중 녹화한 것 • 생태이프 2개	• 녹화된 것 5개 • 생태이프 3개	

도필히 숙지해야될 사항이다.

단일세율이란 해외에서 구입하여 휴대 반입한 물품의 총액이 국내도매가격기준 50만원이하일 경우 물품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30%의 세금을 일괄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여행자가 50만원상당의 물품을 통관할 경우 免稅上限線인 10만원을 뺀 나머지 40만원에 대해 30%의 稅率을 적용, 12만원의 稅金만 내면 된다.

여기서 課稅基準價格이 되는 國內都賣價格과 現地購入價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여행자는 사전 해외에서 구입하려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총액이 국내 도매가격기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정해진 품목별 課稅率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품목별 간이세율의 예를 들면 △ 수류 80% △ 모피 70% △ 시계·골프채·커피 60% △ 냉장고·세탁기·카메라 50% △ 화장품·모직의류 녹용 40% 등이다.

따라서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는 것보

다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행자는 해외에서 쇼핑에 나설 때 이와같은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이밖에 個當 또는 세트當 가격이 1백만원을 넘는 高價品이거나 전체휴대물품이 50kg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밥솥·전족·미니컴포넌트·정수기·가스테이블 등은 특정파세품으로 지정돼 공항세관에서 통관하지 않고 모두 서율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까다로운 基本稅率을 적용받게 되는데 오는 5월 1일부터는 해외취업자들의 휴대품 통관에도 이와같은 기준을 적용해 되어 있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다.

그 즐거운 일이 외제물품에 대한 무리한 욕심으로 불쾌하거나 부담스럽게 끝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와같은 욕심이 우리경제에 구멍을 뚫고 허용과 사치로 이어져 사회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여행자가 깊히 留念해야 될 사항이다.

까다로운 해외여행·까다로운 通關 등 후진적 규제는 여행자들의 자질이 높아지는데 따라 보다 改善되고 先進化될 수 있는 것이다. ♣♣